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5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직 원	㈜하나은행 前 □□□지점 대리(現 △△△지점 차장) ♧♧♧

2. 조치내용

□ 직원에 대한 조치

◦「금융실명법」상 ‘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’으로 ‘주의’로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직 원

1.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

◦「금융실명법」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

- ㈜하나은행 前 □□□지점 대리(現 △△△지점 차장) ♧♧♧은 20xx.xx.xx. ♥♥♥ 명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, 동 지점 PB ♤♤♤(‘xx.xx.xx. 퇴직)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실명확인필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명의인 계좌 임의 개설 명세

개설일	상품종류	계좌번호	거래금액(원)	행위자	실명확인자 (보조자)
20xx.xx.xx.	정기예금	**********	40,000,000	♤♤♤	♧♧♧

나. 근거법규

□ 직원에 대한 조치

○ 「금융실명법」 제3조

○ 「금융실명법 시행령」 제4조의2 제1항 제1호